#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184

제출연월일 :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 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7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제37조제12항"을 "제37조제1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38조의3제6항 중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장까지"를 "제1항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3호 중 "제38조의2제8항"을 "제3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제9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9항"을 "제37조제10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
원회 운영 등) ①·② (생 략)	원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
	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
	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
	<u>다)를 둔다.</u>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
	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
	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u>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u>
	여 필요한 사항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현행 과 같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 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 방식 ·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 의결
    - ⑤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u>⑦・⑧</u>(생 략)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u>제8항</u>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① ~ ② (생 략)

<u>⑦</u> <u>제6항</u>
<u>제6항</u>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u>⑩</u> <u>제9항</u> -
$\underline{11}$ $\sim$ $\underline{13}$ (현행 제 $10$ 항부터 제 $12$
항까지와 같음)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힉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37조제7항</u>을 위반하여 허 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u>제37조제12항</u>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 5. (생략)
- ②・③ (생 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저 ① ~ ⑥ (생 략)

<신 설>

데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37조제8항</u>
4. <u>제37조제13항</u>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
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 · 서비스의 내용 · 방식 · 형

- ⑦ (생략)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감독) ① ~ ④ (생략)
  - ⑤ 삭 제
  -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u>⑨</u>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감독)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⑥ ---------- 제37조제9항 및 제10항--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 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38조의2제8항</u>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5. (생략)
- ② ~ ④ (생 략)

<신 설>

<u>.</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b></b>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의2제9항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
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

<신 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제) -----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1. ~ 8. (생략)
- 9.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 · 검사기관

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 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 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37조제5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u>제37조제9항</u> (제38조의3제6항	1. <u>제37조제10항</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	
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	
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 4 (샛 량)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
1	제40조의3(포상)	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0조의3(포상)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 -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추후 포상금을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2. 상세 사유

- 제40조의3(포상)은 정보통신융합등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반드시수반되지는 않음. 추후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 포상금 지급 예시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 액수를 준용하여, 1명당 1,000,000원, 연 2명을 포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비용은 매우 소액임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최준영	남승진	박지현	엄열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승진	044-202-6113	seung0320@korea.kr